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47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권영진·주진우·윤한홍

엄태영 · 조경태 · 정성국

박정하 • 이만희 • 강명구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로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법」의 개정)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6 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로 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

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 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7항 중 "수거·반품 및"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를 "지정 절차, 업무 범위 및 제7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준"으로 한다.

제5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 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에 따른다.
- 제6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7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8조(「주차장법」의 개정)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
<u>정지</u> ,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	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u>인의 효력 정지</u>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	
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5조(이착륙장) ① ~ ⑥ (생	제25조(이착륙장)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	7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u>	원상회
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
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의 취소, 6개월 이내의 허가 또
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는 승인의 효력 정지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국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	
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업의 시행 및 관</u>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한다.

- 1. ~ 4. (생략)
- ②·③ (생 략)

제7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 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 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

 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 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 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 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 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삭 제> 절차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다.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③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
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u>있다.</u>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u>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u>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u>항까지에 따른다.</u>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	<u><삭 제></u>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u>있다.</u>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	<u><삭 제></u>
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 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 여야 한다.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 ⑥ (생	및 품질인증 등)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⑦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	
·제품 및 서비스 등을 <u>수거·</u>	<u>수거·</u>
<u>반품 및</u>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	반품하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u>기간을 정하여</u>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	
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	9
관의 지정기준, <u>지정 절차 및 업</u>	<u>지정 절차, 업</u>
<u>무 범위</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무 범위 및 제7항에 따른 시정
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조치의 기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______ 혀 행 개 정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 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 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 장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 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 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 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 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아

- ②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 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 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 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 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 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 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 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 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 행강제금"으로 본다.
- ①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8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강제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 략)

행

혀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 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 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 의2제1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정

아

개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 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 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 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

다.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 <삭 제> 의2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 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	②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	
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	
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	
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u>일정기간</u>	<u>6개월</u>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행

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 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 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 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 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 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 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정

아

개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 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 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 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 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 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 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삭 제>

④ (현행 제7항과 같음)